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참고 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부터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이윤수 (02-2156-9810)	담 당 자	이인옥 사무관(02-2156-9811) 이혜진 주무관(02-2156-9822)	
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권대영 (02-2156-9710)		류성재 사무관 (02-2156-9718)	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이형주 (02-2156-9870)		박재훈 서기관 (02-2156-9871)	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진창 (02-2156-9850)		양병권 사무관 (02-2156-9853)	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최용호 (02-2156-9750)		이종림 사무관 (02-2156-9752)	
	금융위 보험과장 이동훈 (02-2156-9830)		임형준 사무관 (02-2156-9832)	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안창국(02-2156-9890)		송병관 사무관 (02-2156-9891)	
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김동환 (02-2156-9490)		김원태 사무관 (02-2156-9491)	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최성일 (02-3145-8300)		이성원 부국장 (02-3145-8001)	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구경모 (02-3145-8020)		장진택 팀장 (02-3145-8022)	
	은행연합회 상무 홍건기 (02-3705-5184)		이인균 부장 (02-3705-5247)	
	생명보험협회 상무 김기성 (02-2262-6569)		강성규 부장 (02-2262-6620)	
	손해보험협회 상무 박광춘 (02-3702-8526)		서영중 부장 (02-3702-8530)	
	금융투자협회 상무 전상훈(02-2003-9015)		이창화 실장 (02-2003-9030)	
	여신금융협회 본부장 박성업(02-2011-0720)		이호택 부장 (02-2011-0724)	
	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한대호(397-8608)		김생빈 부장 (02-397-8630)	
금융결제원 상무 이종규 (02-531-1025)	류재수 부장 (02-531-1100)			

제 목 : 5.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- 5.6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,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.
- 5.6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5.9일에 상환하시거나,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
- 5.6일 당일 부동산매매,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,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요

- 5.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·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,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(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·협약 등에 따라 차이)

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

2.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
가. 대출금 만기가 5.6일인 경우

- 금융회사(은행·보험·저축은행·카드 등) 대출금의 만기가 5.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(예: 어린이날, 추석)과 마찬가지로 5.9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

- 또한,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(예: 5.4일) 가능

※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 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(민법 제161조)

나. 예금 만기가 5.6일인 경우

-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.6일인 경우 만기가 5.9일로 자동연장됨 (이 경우 5.6일~5.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)

-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5.4일 (前영업일)에 예금인출 가능

다. 5.6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

- 5.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

* 예)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4.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5.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(펀드 집합투자규약)

라. 결제대금일이 5.6일인 경우

- 카드·보험·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.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.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

* 다만,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

마. 5.6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

- 5.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

* 예)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5.2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5.4일 또는 5.9일 수령 가능

바. 5.6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

- 5.6일 당일 부동산 계약(매매 잔금거래, 전세금 등),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,

-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,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

*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·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할 필요

- 외화송금,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,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

※ 5.6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·전세자금 대출,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

3. 향후 계획

-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·시행 (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)

* 예) ①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, 입간판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.6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

② 콜센터,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

③ 5.6일 주택담보대출, 외환거래,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·안내 등

임시공휴일에 따른 **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** 경제 5단체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**유관기관에 협조요청** (은행연합회)

* 예) 5.6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,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

신·기보,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5.6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**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·안내** 예정

※ 문의사항이 있거나, 5.6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,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(☎1332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

주요 Q&A

1. 5.6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?

- 5.6일 만기가 도래하는 **금융회사 대출**(은행, 보험, 저축은행, 카드 등) 및 **주식 신용거래금액**은 만기가 **5.9일로 자동 연장**되므로, **5.9일에 상환**하더라도 연체 없이 **정상 상환**으로 처리됨
-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**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**할 수 있기 때문에,
 -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**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**을 거쳐 **조기상환**도 가능(예: 5.4일 상환)

2. 5.6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6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?

- 5.6일인 이자납입일이 **5.9일로 자동 연장**되므로, **9일에 이자를 납입**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됨

3. 5.6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?

- 5.6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5.9일에 **5.6~5.8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**
- 또한,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**前영업일(5.4일)에도 찾을 수 있음**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중지문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	---	---

4. 5.6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?

-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, 5.6일이 납부일인 경우 5.9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
- 한편, 고객이 원하는 경우 5.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 (5.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)

5. 5.6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?

- 5.6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5.9일에 출금
 - * 자동납부 : 요금청구기관이 물품·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(예: 보험료, 휴대폰 요금)
- 다만,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

6. 5.6일 당일 어음, 수표,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?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?

- 5.6일 만기도래하는 어음·수표·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5.9일 가능
- 5.6일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(종이)어음, 당좌수표의 발행·배서는 가능하나,
 -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,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

7. 5.6일 당일 부동산거래,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?

-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,
 -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
 - 5.6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·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·거래 역시 미리 송금(거래)일을 조정할 필요
- ※ 5.6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·전세자금 대출,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

8. 5.6일 전후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?

- 5.6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
 - * 퇴직연금은 실무적으로 퇴직연금 청구 후 2~3영업일 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4.29일 신청시 통상 5.4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, 약관상 지급기한은 청구시점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되어 있어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펀드로 운용시 지급기한이 더 소요 되므로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필요

9. ATM, 인터넷 뱅킹,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,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?

- 자동화기기(CD/ATM) 인출한도, 인터넷뱅킹·폰뱅킹의 이체한도는 **개별 금융회사별·고객별로 상이함**
- 따라서,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·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**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 확인**이 필요함
- **인출·이체한도 증액**을 위해서는 **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**이 필요함

<참고> 관련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

구 분		1회 이체한도	1일 이체한도
현금카드	인출한도	100만원	600만원
	이체한도	600만원	3,000만원
텔레뱅킹	개인	5,000만원	2.5억원
	법인	1억원	5억원
인터넷뱅킹	개인	1억원	5억원
	법인	10억원	50억원
모바일뱅킹		1억원	5억원
메일뱅킹		1,000만원	5,000만원

※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

10. 5.6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?

-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,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**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**

※ 예시

- ① 생명보험,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, 다만 공휴일인 5.6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5.9일 이내 처리 가능 → 사전 협의시 5.4일 지급도 가능
- ②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

11. 5.6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-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(약관)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
- 따라서 5.6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

※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is.kofia.or.kr>)에서 확인 가능

12. 5.6일 상황이 예정된 ELS,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?

- 5.6일 상황이 예정된 ELS·DLS는 상환금액을 **5.9일에** 지급받을 수 있음

13. 5.6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,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?

-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5.6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5.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됨

※ 예시

- ① (사례1)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, 5.3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5.5일 또는 5.6일이 아니라 5.9일로 순연됨
- ② (사례2)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, 금, 배출권의 경우 5.4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5.4일 당일 수령함
- ③ (사례3)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, 5.4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5.6일이 아니라 5.9일로 순연됨
- ④ (사례4) 채권장외매매의 결제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지만, 5.6일에는 결제 불가

14. 신·기보 보증과 관련하여 5.6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?

- 신·기보는 5.6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**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** 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

- ① (신규보증)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, 그 밖의 기업은 5.9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
- ② (기한도래) 개별 영업점이 5.6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
 - 기업과 협의를 통해 5.4일(前 영업일)까지 사전에 처리하거나 5.9일까지 연장이 모두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

15. 5.6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?

- 5.6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**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(5.4일)에 받거나, 익영업일(5.9일)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하여 조정할 필요**

- ① 5.6일 대출심사 완료가 필요한 고객을 사전에 파악하여 5.4일까지 대출심사 완료
- ② 심사완료 후 대출이 미실행되었거나 대출희망일이 5.6일인 고객 대상으로 SMS 발송
- ③ 대출희망일이 5.6일인 고객에게는 공사에서 유선 안내를 추가 실시

16. 5.6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?

- 주택연금 지급일이 5.5일 ~ 5.8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**5.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 예정**
 -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5.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5.4일 찾으실 수 있음

17. 5.6일 주택연금 예약상담을 신청했는데?

- 5.6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를 드려 **상담일을 변경·예약해 드릴 예정**
 - 또한, **고객이 직접** 주금공 지사 또는 은행에 **전화하여 상담일 변경 가능**